

'19년 제2차 경찰공무원 실기시험 문제지(주관식)

응시계급	경 위	응시분야	조사간부	응시번호	성 명
------	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

1. 甲은 2019. 3. 5. 21:00경부터 23:30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소방서 주변 식당에서 친구 A와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:45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던 중 광명시 철산동 (지번 생략) 앞길에서 B가 운전하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. 그 후 의식을 잃은 甲은 119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. 신고를 받고 H병원에 도착한 경찰관 P는 甲의 아들 C의 동의를 얻은 후 의식이 없는 甲의 혈액을 의료진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했다. 그런데 P는 법원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.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채취된 甲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.211%로 측정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의뢰회보를 했다. 검사는 甲을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 (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 제1항, 제148조의2 제1항)로 기소했다.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『피고인(甲)은 2019. 3. 5. 23:45경 혈중알코올농도 0.211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소방서 부근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(지번 생략) 앞길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로 운전하였다.』는 것이다. 제1회 공판기일(2019. 4. 23.)에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(가)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했고, 甲은 (나)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.

문1) 밑줄 친 (가)의 감정의뢰회보가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. (30점)

문2) 밑줄 친 (나)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. (20점)

응시계급	경 위	응시분야	조사간부	응시번호		성 명	
------	-----	------	------	------	--	-----	--

2.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약술하시오. (약술형, 25점)

3.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. (약술형, 25점)